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표준(안)

[제정 2013.2.22.]

개정 2013. 4. 9.

개정 2014. 9.1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삭제 2013.4.9.)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과 학·석사연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과목별 1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④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된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⑥ 자격시험의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4.9.)

⑦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포함)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한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의 위원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추천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 ⑤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SCI, SCIE, SCOPUS, KCI급 국내외학술지 중 하나 이상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예외) 본 시행세칙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다.